

『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권재욱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구미시 건축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5. 17. ~ 5. 24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해체공사 시에는 소음, 진동, 분진, 해체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공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신축 공사에 비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.
- 안전이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체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